

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안치영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4년 10월 2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2일

3. 제안이유

○ 「국가유산기본법」 및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○ 도등록문화유산 등의 등록과 관리 및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필수보존요소·근현대문화유산지구 등 근현대문화유산법에서 새롭게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문화유산 기초조사(안 제20조), 문화유산 정보화 촉진(안 제21조) 등 문화유산 관련 조사와 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항 신설

○ 도등록문화유산과 관련하여 등록기준 및 절차, 필수보존요소,

현상변경의 허가·신고, 말소, 지원, 특례 등의 조항을 신설
(안 제55조~제71조)

- 기존 도지정문화유산 관련 조항을 별도의 장으로(제5장) 분리하고 근현대문화유산법에 신설된 조항을 반영함.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필요성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「국가유산기본법」,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등 상위법령 규정에 맞춰 관련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주요 내용 검토

- 안 제20조는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초 조사 규정을 신설하여,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.
- 안 제21조는 문화유산 관련 자료를 정보화하여 도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이를 위해 문화유산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.
- 안 제55조부터 안 제71조까지는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별도의 장(근현대문화유산)으로 분리하여 구성하였음.
- 안 제55조는 도내에서 보존과 활용이 필요한 문화유산을 도등록

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, 안 제56조에서는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을 명시하였음.

- 안 제57조는 도등록문화유산 중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안 제58조에서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문화유산에 대해 임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하였음.
- 안 제59조는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문화유산을 관리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, 소유자가 없거나 관리가 어려운 경우 도지사가 관리자를 지정하여 문화유산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안 제60조는 도등록문화유산의 신고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, 도등록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.
- 안 제61조부터 안 제63조까지는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한 신고 및 허가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음.
- 안 제64조는 도등록문화유산이 건설공사로 인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, 공사중단 및 예방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65조는 도등록문화유산이 멸실되거나 보존 가치가 상실된 경우, 도지사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였음.
- 안 제66조는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, 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68조는 도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례 법령의 특례를 규정하였음.

- 안 제69조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,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였고, 안 제70조에서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음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「국가유산기본법」,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등 상위법령의 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, 충청북도의 문화유산 보호 및 활용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음.
-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상위법령과의 일치성을 유지하면서도, 충청북도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, 입법취지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